

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와 정부의 환경정책

박 영 숙 (민 주 당 최 고 위 원)

I.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개요

지난 90년 8월 나이로비에서의 제1차 준비회의, 91년 3월의 제네바에서의 제2차, 91년 8월의 제3차, 그리고 92년 4월의 뉴욕 제4차 준비회의 끝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가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발」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20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세계 105개국의 정상과 183개국의 정부대표와 환경전문가 그리고 6,000개의 민간단체대표 3만여명 등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우리나라에서도 6개부처에서 15명의 공식대표와 12명의 자문관 그리고 기타 참석인원 11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가했으며 국내 민간환경단체에서도 유례없이 70여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이번 리우 데자네이로에서는 두 개의 별개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하나는 잘 알려진 각국 정부대표자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이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대표가 만들어낸 '글로벌 포럼'인 지구환경회의이다. 원래 정부측과 민간단체측은 '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후손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지탱가능한 개발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지구헌장」과 산림보호, 토지자원, 사막화, 생물다양성 및 생물공학 등의 자연자원관리분야의 의제와 대기환경, 해양환경 및 각종 폐기물의 관리 등의 환경관리와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기구와 제도 등의 공동의제로 되어있는 21세기 강령으로 알려진 「의제21」의 내용을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거듭되

는 준비회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가이기주의의 발로와 상업주의로 인해 회의내용 성격에 있어 환경문제는 실종되고 경제, 외교문제로 변질되면서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이 차단되므로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협약.논의를 하게 되었다.그 결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헌장」대신 타협의 산물인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으로 그 리고 「의제21」도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채택한 대안적 협약인 「지구헌장」을 포함한 30개 협약과는 달리 별개의 것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그들 협약 내용에 있어서 차 이라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안적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비축소, 핵발전소문제 그리고 다국적 기업문제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는 빠져 있는 점이다.

이번 리우회의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운동이야말로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지만 참가국 중 15개 정부대표단에는 민간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런데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지극히 미약했다.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민간단체운동을 과소평가하거나 왜곡인식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상이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로 우리의 환경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원치않든 간에 과감한 방향전환을 강요받고 있다.종전과 같은 식의 개발위주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결과

무엇보다도 이번 '리우회의'의 성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 될 '리오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했다는데서 의미가 있으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활용될 전망이다.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변화방지협약'과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여개국이 서명한 것도 이 회의의 결과물이다.

1) '리우회의' 주요합의 내용과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정부발표에 따르면)

*주요합의 내용

	리 우 선 언	의 제 21
총괄	27가지 원칙	38개 분야
의미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리우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
경과	최종 준비회의('92.4 뉴욕) 초안 그대로 채택	최종 준비회의('92.4 뉴욕) 초안보다 약화된 형태로 채택
주요 합의 내용	- 지구환경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원칙7)인정 - 환경보호를 구실로한 일방적 무역 제재조치 금지	- 재정지원: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를 국가별 GNP의 0.35%-0.7%로 상향조정 - 기술이전: - 공공이 보유한 기술 실비이전 - 특허로 보호된 기술은 선진국에서 상업적으로 구입. 개도국에 비 상업적으로 이전한다 - 특허기술 중 협약상 의무이행에 필수적 기술은 강제사용한 후 추후 적정 보상 - 해양생물자원보호: 공해상의 과다 어로행위 규제, 구체사항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

*정부가 말하는 활동성과

	활 동 성 과
외 교	- 선진.개도국간 쟁점사항 조정. 중재 역할 - 본회의 의장단 피선('92.6.9 본회의 주제)
기 술 이 전	- 정부의 최대 역점사항 - 공공이 보유한 기술의 실비이전 - 특허로 보호된 민간소유 기술 중 협약이행에 필수적 기술은 특허를 해제 강제실시후 적정 보상
기후변화방지협약	- 에너지 다소비형제품 생산국가 특별고려 단서조항 - 화석에너지 다사용 36개국가(선진국)에서 제외 - 화석연료 사용규제 완화 -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완화
무 역 규 제	- 국가간의 환경기준 차이에 의한 무역규제조치 조항 삭제 - 정부의 보조금 사용금지 조항 삭제
해양생물자원보호	- '유엔해양법'의 일반원칙 준수선에서 타결 - 원양어업의 위축방지

*즉각적인 규제가 아닌 유예를 받은 것이 성과라고 함

III. '리우회의' 및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준비협상시 우리가 선진국입장인지 개도국입장인지 불분명하여 회의장에서 대표들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위상에 있는 소위 선발개도국으로서 3년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중간위상으로 금번 리우회의에서 국제환경협상의 핵심사항인 규제약속, 자금지원, 기술이전의 3개부문에서 우리는 수혜국에서는 제외되면서 기여국으로 분리되는 경우 아직 우리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었다. 외무부의 환경대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의 외교적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물에서 보듯이 당장의 규제에서의 유예는 받았으나 그렇다고 UR에서처럼 무대책으로 있다가는 국민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정물질 사용규제와 관리방법의 규제에 의한 국내산업 파급효과, 둘째는 무역규제로 인한 수출입파급효과 셋째로 환경오염비용의 원가반영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프레온가스 사용규제

국제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면 항상 CFC(염화불화탄소)를 연상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년 5월말부터 규제함으로써 CFC생산업체는 막대한 타격(년 4조추정)을 입지만 CFC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측면에서는 CFC의 원가비중이 낮고 대체물질 조달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정부에서도 이미 '9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화석연료의 사용규제

금번 기후협약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과다 사용국에 대한 특별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은 없으나 이후 논의될 의정서에서 각국의 의무를 구체

화할 경우 전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사용문제는 전체 산업구조와 직결되며, 또 청정에너지사용구조로의 재편에도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의존도가 높고(80.4%) 에너지 사용증가속도가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14.1%) 그 영향이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하다.

('90년 기준,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에너지 소비증가율	0.2	1.3	0.9	3.7	0.5	14.1
화석연료 의존도	63.6	52.5	69.4	73.4	78.2	80.4

*유해폐기물 규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금년 5월부터 발효됨으로써 외국의 폐기물에서 구리, 납, 아연 등 재생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재생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긴요하다. 이 협정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방법, 거래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고 바젤협약가입국은 비가입국에 유해물질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우리도 조만간 가입해야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재생원자재 확보문제도 해결되고 또 협약의무준수조항도 국내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사항은 아니다.

2) 환경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대기부분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요인을 국제무역의 일반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해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환경기준 차이 상당액만큼을 관세로 상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서 더러운 나라에서 만든 더러운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비록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무역규제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별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따라 '95년부터 자동차수입요건 배출기준과 연료사용기

준을 활용할 예정이고, 네덜란드는 음료수 수입시 용기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국내의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환경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법외는 달리 대책이 없다.

('89년 기준, %)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스웨덴
GNP대비 환경투자비중	0.14	0.84	0.57	1.03	1.69

3) 환경오염비용의 원가비용의 원가 반영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영향

환경오염비용의 원가반영이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환경규제를 실현하자는 선진국들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때 환경오염은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 환경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 비율은 낮고 화석연료 사용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우는 대단히 불리하다. 이번 리우회의에서는 다행히 '탄소세'조항은 빠졌으나 우리도 이후부터는 오염원 인자비용부담원칙을 본래의 뜻대로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리우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원하든 원치않든 생활양식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앞으로는 복지, 후생의 개념이 과다한 물자소비 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소비패턴을 자원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소비패턴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IV. 리우회의 평가

이번 리우회의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제적 충격 등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리우회의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면 현재 하나뿐인 지구가 환경적으로 위기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세계가 함께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우선언'이나 '의제21'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을 선도해주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는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하나 이를 계기로 국내환경오염방지산업 및 기술신장과 저공해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미리 확대해 나가고 개발정책추진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도록 국내정책기조를 시급히 전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리우회의에 대한 정부대응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지구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내환경보전에는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관계개선 시도를 회피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가 '90년 8월 6일부터 '92년 4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열렸으나 3차회의까지는 제대로 참여조차 못해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4차회의 또한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몇몇 부처이외에는 검토의견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V. 리우회의에 따른 정부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문제

지금까지는 환경정책이 개발과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에 밀려서 제구실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제도나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제도, 그

리고 현재 시행을 미루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 등이 본래의 목적인 오염방지 보다는 모두 기업들의 환경파괴행위에 면죄부의 역할만 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하여 개발행정과 환경행정을 조화시켜야 한다. 권한도 안주고 책임만 물으면 소신 있는 행정보다는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의 증가율은 2배, 3배로 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예산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3동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나 시설 등을 설계할 때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도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준공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제정책에는 오염을 방지하는 환경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환경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정부내 환경특별기구 구성문제

정부는 리우회의 결과 정부내에 환경관계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환경문제로 위원회나 대책회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해 왔었다.

작년('91년) 3월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해서 구성했는데, 대책회의는 지난 4월 리우회의 참가를 눈앞에 두고 처음으로 열렸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밖에 열리지 않았고 처리된 안건 숫자도 3건밖에 안된다. 따라서 기구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계획 문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서명으로 에너지부문대책을 발표하고, 장기 에너지계획

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이미 지난 '83년에 정부는 대
대적으로 소규모 수력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추진실적이 거의 없다.
지난 '87년 12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88년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워졌음에도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가 동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88년 3월 구성된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리우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는 핵발전소 증설사업에 더 열중하고 있
는 것이다.

※환경보전에의 국민참여문제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환경의식을 계기로 환경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
면서 그 실행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전시행정의 틀을 못벗어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개선대책추진계획 등
을 집중홍보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캠페인성 홍보나 국민동원 방식의 환경운동은 과거
의 실패 경험으로 충분하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
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환경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것이다.

VI) 리우회의결과 국회상임위원들의 역할

리우회의는 인류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작이다. 각국은 매년 의제21'의
국내이행사항에 대해 UN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관련 13개
부처가 1000page에 달하는 광범위한 분량의 '의제21'을 연구, 분석하여 국내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 일람표는 정부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내환경관련 업무와 지구환
경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7월 현재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각 상임위에
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환경관련 업무와 지구환경관련업무및 정부의 대책일람표

정부 부.처	국내 환경관련 관장 업무	지구환경관련 업무	정 부 의 대 책 및 계 획
경제기획원	- 환경관련 정책심의.검토 - 환경관련 예산편성	- 빈곤과 기본적 수요 - 국제경제 및 환경 - 환경과 개발의 통합 - 개도국의 능력 형성 -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 자원과 재정체계	- 국제환경협약이 생산.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92.9) - 국제환경협상 종합대책('92.8) - 지구환경관계장관, 차관, 실무기획단 구성 ('92.7) -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수전.보완 ('92.12)
과학기술처	-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종합.조정 - 방사능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 핵물질 및 방사능 산업폐기물의 운송.처 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 방사성 폐기물 - 기술이전 -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 - 생물다양성 - 해양.연안 - 유해폐기물 - 생물공학	- 새로운 환경수요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수립('92.9) - 환경기술개발 종합대책수립('92.9)
내무부 (해양경찰대)	-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도립공원 의 지정승인 및 감독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및 방제		
농림수산부	- 농수산 분야 공해대책 -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 및 기술지도	- 토지자원 - 사막화.한발	- 목재 및 수산자원 확보대책('92.12)
상공부	- 독극물 수출입 및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 공업배치 및 공업단지 관리 업무	- 국제경제 및 환경 - 대기보호	-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계획수립 ('92.9)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 수 립('92.12) -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수립('92.9) - 자원절약형 산업구조형성 촉진에 관한 법 률 입법추진 - 환경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유해폐기물의 교역 규제 등에 관한 법률 ('92.9)
동력자원부	- 저유황유의 공업 및 공해방지 -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와 핵폐기물	- 대기보호	- 에너지 절약 종합시책('92.7) - 환경요인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계획 조정 ('92.12) - 에너지설비투자 특별기금 조성('93) -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계획수립 ('92.9)
건설부	-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입안 조정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지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하천관리 및 하천호소의 매립과 점용 - 상.하수도 계획의 총괄.조정 -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행	- 담수 -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환경처	- 환경관련 업무조정. 총괄	- 교육. 훈련. 홍보 - 개도국의 능력형성 -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 산림황폐 -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 고형 및 하수폐기물	- 환경기술 개발 종합대책수립('92.9) - 각종 환경기준의 종합검토('92.12) -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92.9) - 바젤협약 가입준비대책('92.7) - 정부 각 부처에 환경문제 전담 공무원 배치 - 환경기술개발인법 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 환경산업육성법 제정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자원이용 합리화법 제정 -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환경부문 계획 수정('92.12))
노동부	-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개선	- 주요그룹(노동조합)의 역할	
교통부	- 자동차 정비 및 검사(배출가스. 소음) - 자동차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 관광지의 지정. 개발		
문화부	- 희귀 동. 식물 등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 관리		
산림청	- 산림기본계획수립 -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의 규제 - 산림의 보호 및 산지훼손 행위의 단속	- 토지자원 - 취약생태계(산지) - 생물다양성	
외무부	- 환경외교 총괄	- '의제21'의 구조 - 목표와 이행체계 검토 - 제도관계사항 - 기존 협약의 조사 - 국제법 체계 - 지역조직의 역할	- 국제환경협상 종합대책('92.80)
농촌진흥청	-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 사막화. 한발 - 토지자원 - 생물다양성	
수산청	-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 해양. 연안	
해운항만청	- 공유수면의 매립. 관리 - 항만오염 방지대책	- 해양. 연안 - 해양(종합문서)	
교육부		- 교육. 훈련. 홍보	
보사부	- 음용수 관리	- 인간보건의 보호와 증진	

*환경관계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환경정책 기본법	- 지하수의 고갈.오염과 지방침하도 환경오염에 포함 -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환경오염 중복규제 - 환경오염자료의 공개 열람제도 도입 - 환경기준 강화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 배출부과금제도 개선 - 총량규제제도 개선 -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음.진동 규제법	- 항공기 소음기준 신설 - 철도(고속전철과 지하철포함)의 소음기준 - 생활소음규제 강화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	- 기업주와 주민간의 불평등관계 조정 - 당사자간의 불평등관계 조정 -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 기능강화 -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이행 청구제도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	-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지 회복 - 예산확보 - 자원재생공사의 권한과 책임강화

*민주당의 환경정책 - 14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

- 환경오염방지비용의 원인자 부담
- 환경처의 환경부승격
- 각 시.군에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 총량규제 실시
-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의 연동제 실시
- 환경행정공개와 행정절차법 제정
- 환경감사원 제도도입(환경오염집단민원 해결)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강화
- 농약대체품의 개발촉진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 환경사범 처벌 강화
- 산성비.지구온실화.오존층 등의 파괴방지
-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촉진
- 공해피해특정지역의 지정관리

민주당 의원세미나

박영숙 최고위원

92. 7. 9